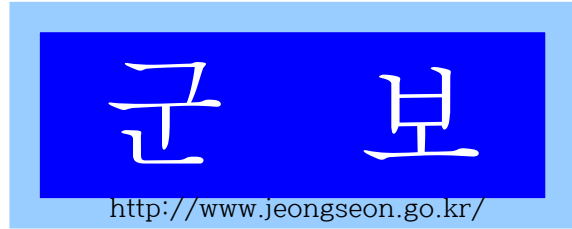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50호 2018. 6. 12. (화)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8-86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4
- 정선군 고시 제2018-87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7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8-650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10
- 정선군 공고 제2018-653호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8-86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고시 제2016-25호(2016.4.15.) 및 강원도고시 제2016-150호(2016.4.29.)로 결정(변경) 고시된 2020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행정구역별 용도지역 착오기재에 따른 오류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8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2020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이후 강원도고시 제2016-325호(2016.8.12.)의 행정구역별 용도지역 착오기재 오류사항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이후 고시된 강원도고시 제2016-509호(2016.12.16) 및 정선군고시 제2017-3(2017.1.6.)호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금회 행정구역별 용도지역 면적을 확정하고자 함.

나.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1,219,720,000	-	1,219,720,000	100	
도시 지역	도시지역계		42,548,998	-	42,548,998	3.49
	주거지역	소계	5,136,045	감)109,441	5,026,604	0.41
		제1종일반주거지역	1,167,759	감)30,628	1,137,131	0.09
		제2종일반주거지역	3,616,804	감)95,458	3,521,346	0.29
		제3종일반주거지역	80,713	감)2	80,711	0.01
		준주거지역	270,769	증)16,647	287,416	0.02
	상업지역	소계	1,125,099	감)4,664	1,120,435	0.091
		일반상업지역	1,108,244	감)4,664	1,103,580	0.09
		근린상업지역	16,855	-	16,855	0.001
	공업지역	소계	619,126	감)7,734	611,392	0.06
		일반공업지역	306,497	감)212	306,285	0.03
		준공업지역	312,629	감)7,522	305,107	0.03
	녹지지역	소계	35,668,728	증)121,839	35,790,567	2.93
		보전녹지지역	3,348,109	증)452,516	3,800,625	0.31
		생산녹지지역	905,292	감)1,755	903,537	0.07
		자연녹지지역	31,415,327	감)328,922	31,086,405	2.55
관리지역	소계		224,156,102	증)433,376	224,589,478	18.4
	보전관리지역		94,172,463	증)409,100	94,581,563	7.75
	생산관리지역		27,563,037	증)58,736	27,621,773	2.26
	계획관리지역		102,420,602	감)34,460	102,386,142	8.39
농림지역		944,933,914	감)433,376	944,500,538	77.44	
자연환경보전지역		8,080,986	-	8,080,986	0.66	

※ 지정 : 정선군 고시 제2017-3호(2017.1.6.)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행정구역의 용도지역 착오기재 정정 사항으로 최종 면적 변경 해당 없음.

2) 행정구역(읍면별) 지정내역(변경 후)

구 분			합 계	면 적(㎡)				비고
				정선읍	고함읍	사북읍	신동읍	
총계			1,219,720,000	213,819,486	52,730,162	46,680,241	119,850,095	
도시지역	도시지역계		42,548,998	9,081,441	7,979,944	3,854,485	10,327,632	
	주거지역	소계	5,026,604	1,144,312	1,067,544	411,983	827,489	
		제1종일반주거지역	1,137,131	137,620	415,902	104,076	-	
		제2종일반주거지역	3,521,346	954,062	620,848	236,155	724,788	
		제3종일반주거지역	80,711	10,800	21,247	48,664	-	
		준주거지역	287,416	41,830	9,547	23,088	102,701	
	상업지역	소계	1,120,435	228,647	199,876	190,453	179,853	
		일반상업지역	1,103,580	211,792	199,876	190,453	179,853	
		근린상업지역	16,855	16,855	-	-	-	
	공업지역	소계	611,392	127,438	24,675	-	196,568	
		일반공업지역	306,285	-	-	-	184,197	
		준공업지역	305,107	127,438	24,675	-	12,401	
	녹지지역	소계	35,790,567	7,581,044	6,687,849	3,252,049	9,123,722	
		보전녹지지역	3,800,625	1,360,245	207,394	132,689	349,546	
		생산녹지지역	903,537	-	-	-	-	
		자연녹지지역	31,086,405	6,220,799	6,480,455	3,119,360	8,774,176	
관리지역	소계		224,589,478	38,674,445	10,299,829	12,320,602	25,523,171	
	보전관리지역		94,581,563	19,851,040	2,003,724	4,548,070	9,932,548	
	생산관리지역		27,621,773	4,750,558	53,556	674,993	1,999,559	
	계획관리지역		102,386,142	14,072,847	8,242,549	7,097,539	13,591,064	
농림지역			944,500,538	164,876,600	32,090,389	30,505,154	82,066,292	
자연환경보전지역			8,080,986	1,187,000	2,360,000	-	1,933,000	

구 분			면 적(㎡)					비고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화암면	
총계			130,949,569	136,210,190	140,760,091	243,619,960	135,100,206	
도시지역	도시지역계		2,400,000	1,157,574	3,709,930	4,037,992	-	
	주거지역	소계	270,187	290,790	709,618	304,681	-	
		제1종일반주거지역	2,242	118,973	304,608	53,71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67,945	135,477	351,290	230,781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준주거지역	-	36,340	53,720	20,190	-	
	상업지역	소계	103,565	74,920	79,435	63,686	-	
		일반사업지역	103,565	74,920	79,435	63,686	-	
		근린사업지역	-	-	-	-	-	
	공업지역	소계	165,469	23,477	38,815	34,950	-	
		일반공업지역	122,118	-	-	-	-	
		준공업지역	43,351	23,477	38,815	34,950	-	
	녹지지역	소계	1,860,779	768,387	2,882,062	3,634,675	-	
		보전녹지지역	509,540	182,338	671,469	387,404	-	
		생산녹지지역	-	-	464,680	438,857	-	
		자연녹지지역	1,351,239	586,049	1,745,913	2,808,414	-	
관리지역	소계		31,768,700	17,152,661	16,093,880	41,161,921	31,594,269	
	보전관리지역		15,218,031	6,717,636	8,280,868	18,536,874	9,492,772	
	생산관리지역		709,803	3,625,550	2,004,681	9,181,720	4,621,353	
	계획관리지역		15,840,866	6,809,475	5,808,331	13,443,327	17,480,144	
농림지역			96,780,869	117,680,355	120,599,281	196,395,661	103,505,937	
자연환경보전지역			-	219,600	357,000	2,024,386	-	

다.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고시 도면 : 실음생략

정선군 고시 제2018-87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정 선 군 수

1. 고 시 명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고시

-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나. 지정내역 : 19개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임번지 외 18개소)

3. 고 시 일 : 2018년 6월 7일

4.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18년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종류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						
계					62필지	11,627,089	34,749			
제2018-1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임	2,127,659	3,330	토석류	계류보전	
소계						2,127,659	3,330			
제2018-2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6-1임	6,935,165	1,253	토석류	사방댐	
소계						6,935,165	1,253			
제2018-3호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131임	208,863	2,917	토석류	계류보전	
소계						208,863	2,917			
제2018-4호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194임	30,523	2,912	토석류	계류보전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1181천	263,937	1,042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193임	36,844	1,047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108전	1,127	543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194-1임	730	280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109전	474	26			
소계						333,635	5,850			
제2018-5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108임	53,280	470	토석류	사방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249전	5,487	183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259-2구	20,569	597			
소계						79,336	1,250			
제2018-6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87임	14,219	987	토석류	사방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86임	38,074	262			
소계						52,293	1,249			
제2018-7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424-1천	900	223	산사태	산지사방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6-1임	9,711	40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423-1천	460	255			
소계						11,071	518			
제2018-8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13-1구	3,118	484	토석류	사방댐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13임	37,007	266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15-1임	244,909	169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15-4도	1,039	121			
소계						286,073	1,040			
제2018-9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양리	산333임	65,094	896	토석류	사방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양리	221-1구	391,277	195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양리	286-1도	1,459	19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양리	277전	1,714	141			
소계						459,544	1,251			
제2018-10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덕암리	산329임	13,405	1,249	토석류	사방댐	
소계						13,405	1,249			
제2018-11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215-1임	28,453	1,241	토석류	사방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219임	47,584	9			
소계						76,037	1,250			
제2018-13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55임	26,606	754	토석류	사방댐	

소계						26,606	754			
제2018-14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75-4입	2,069	913	토석류	계류보전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77-2구	524	4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81전	4,586	2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산54입	1,315	1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74-3전	512	1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82-1구	10,988	200			
소계						19,994	1,206			
제2018-15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97구	124,831	900	토석류	사방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산200입	454,743	24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443-1도	2,340	5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산190입	66,269	54			
소계						648,183	1,253			
제2018-16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280-1구	7,096	2,828	토석류	계류보전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26입	5,169.00	33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281전	3,613	1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282전	4,350	55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산33입	976	13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05전	2,926	5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23전	1,977	57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06전	5,073	4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07전	775	46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08전	2,131	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22-4전	4,242	51			
소계						38,328	5,379			
제2018-17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산295입	14,736	443	토석류	사방댐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186-3도	3,033	52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516-3	149	78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184전	667	9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516구	42,359	668			
소계						60,944	1,250			
제2018-18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97입	39,120	866	토석류	사방댐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648-1구	78,211	384			
소계						117,331	1,250			
제2018-19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28입	35,368	507	토석류	사방댐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31-1구	22,457	426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27-1입	19,786	317			
소계						77,611	1,250			
제2018-20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산262-1입	36,649	319	토석류	사방댐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산290입	18,362	931			
소계						55,011	1,250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8-650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8일

정 선 군 수

1. 공 고 명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1개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291번지
3. 지정사유 : 산사태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공고기간 : 2018. 6. 8 ~ 2018. 6. 27(20일)
5.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 가. 접 수 처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033-560-2421)
 - 나.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치 제16호의2
6. 지정 예정일 : 2018. 6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정선군청 환경산림과에 방문 열람 가능)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9.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033-560-2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취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12.10.2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진(컬러)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소	전화번호	
	직업(소속)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m ²
이의신청 면적		m ²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심 의	➔	결정 통지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정선군 공고 제2018-653호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영화관의 위치를 추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정선군청 문화관광과(우편번호 26131)

○연락처 : 전화(033-560-2549), 팩스(033-560-2593), 이메일(revamp201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위치) 영화관은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3,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12에 각각 위치한다.

제4조(시설)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매표소 및 매점
3. 휴게실
4. 그 밖의 부대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